

당첨자 공급계약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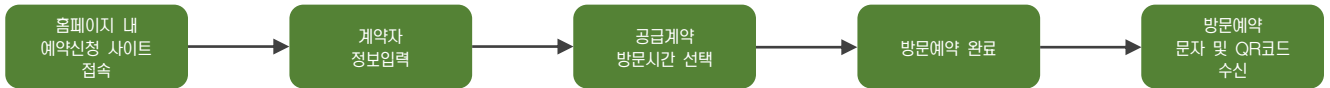
- ※ 당첨자들은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홈페이지(www.prugio.com/house/2020/hanam/apt/index_w.aspx)를 통하여 계약일 및 방문시간을 지정하여 예약 하시기 바랍니다.(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 외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외 동반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시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 비접촉 체온계 및 열화상카메라 등을 통한 체온이 37.3도 이상인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오니 방문 시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 예비당첨자 관련 일정 안내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1. 서류접수 및 계약 일정 안내

■ 서류접수 및 계약 장소 →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견본주택(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1)

구분	기간	방문예약 가능 시간(홈페이지)	비고
당첨자 사전 서류접수	2020.11.18(수) ~ 11.23(월) 6일간 (09:30 ~ 17:45)	2020.11.13(금) 10:00 ~ 11.23(월) 16:00	COVID-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일자 / 시간을 지정한 예약제 방식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당첨자 계약체결	2020.11.28(토) ~ 12.04(금) 7일간 (09:30 ~ 17:00)	2020.11.13(금) 10:00 ~ 12.04(금) 16:00	

■ 예약방법



2. 계약금 입금 안내

■ 아파트 계약금은 분양 안내문을 참조하여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아파트 계약금	발코니 및 추가옵션 계약금
은행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계좌	301-0274-2973-11	301-0277-1628-61
예금주	엔에이치투자증권(주)	엔에이치투자증권(주)
금액	공급금액의 20%	3,000,000원 (정액제) ※ 옵션계약은 공급계약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별도 안내 예정

입금방법

입금자명 : [동][호수][계약자명]
예시 : 101동501호 홍길동 입금 시 → 1010501홍길동

-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동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납부 및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계약 시 제출서류 안내

■ 아파트 계약 방문 시 방문예약 확인문자(QR코드)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간	비고
일반 (공통)	본인 계약시	<input type="checkbox"/> 공급계약 방문예약 확인 문자(QR코드) <input type="checkbox"/>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input type="checkbox"/> 계약자 구비서류 <input type="checkbox"/>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input type="checkbox"/> 계약금 입금증
	대리인 계약시	<input type="checkbox"/> 계약자 구비서류 일체 <input type="checkbox"/> 계약자 인감도장 ※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input type="checkbox"/>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1부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input type="checkbox"/>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상기 서류는 모집공고일 (2020.10.22) 이후 발급 분에 한합니다.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 (일반공급 가점제)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에 당첨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귀하가 청약한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를 위하여 당첨자 제출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당첨자분들은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홈페이지(www.prugio.com/house/2020/hanam/apt/index_w.aspx)를 통하여 서류접수일 및 방문시간을 지정하여 예약 하시기 바랍니다.(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 외에는 예약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외 동반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시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 비접촉 체온계 및 열화상카메라 등을 통한 체온이 37.3도 이상인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1. 사전 서류접수 예약기간 : 2020.11.13(금) 10:00 ~ 11.23(월) 16:00 (45분 단위로 방문예약 가능)

2. 사전 서류접수 방문일정 : 2020.11.18(수) ~ 11.23(월) (09:30 ~ 17:45)

3.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일반공급 가점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 견본주택에 비치
	○		무주택 서약서	-	• 견본주택에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발급용 필수, 용도에 「아파트 공급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의 경우에 한하며 대리인은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보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보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인정보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모집공고일 현재 3년이상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보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직계존속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직계비속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5항에 의거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여, 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복무확인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을시	
무주택 입증서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해당주택	•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축확인서류	해당주택	• 지자체 무허가 증명서류
			소형·자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 주택공시가격증명원(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포함),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 열실·철거예정 증명서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점사실 무효 확인서 등
대리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		위임장	청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관계 및 주소 변경이력이 표기 되도록 "전체포함" 및 "상세"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는 모집공고일(2020.10.22) 이후 발급 분에 한합니다.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초본을 "전체포함"으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 (일반공급 추첨제)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에 당첨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귀하가 청약한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를 위하여 당첨자 제출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 당첨자분들은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홈페이지(www.prugio.com/house/2020/hanam/apt/index_w.aspx)를 통하여 서류접수일 및 방문시간을 지정하여 예약 하시기 바랍니다.(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 외에는 예약이 불가합니다)
-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외 동반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시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 비접촉 체온계 및 열화상카메라 등을 통한 체온이 37.3도 이상인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1. 사전 서류접수 예약기간 : 2020.11.13(금) 10:00 ~ 11.23(월) 16:00 (45분 단위로 방문예약 가능)
2. 사전 서류접수 방문일정 : 2020.11.18(수) ~ 11.23(월) (09:30 ~ 17:45)
3. 일반공급 추첨제 당첨자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일반공급 추첨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 견본주택에 비치
	○		무주택 서약서	-	• 견본주택에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발급용 필수, 용도에 「아파트 공급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의 경우에 한하며 대리인은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5항에 의거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여, 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시
○		1주택 실수요자 주택 처분 확인서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	
무주택 입증서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해당주택	•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족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류	해당주택	• 지자체 무허가 증명서류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 주택공시가격증명원(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포함),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 멸실·철거예정 증명서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대리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		위임장	청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관계 및 주소 변경이력이 표기 되도록 "전체포함" 및 "상세"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
- ※ 상기 서류 외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상기 서류는 모집공고일(2020.10.22) 이후 발급 분에 한합니다.
-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초본을 "전체포함"으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 (기관추천 특별공급)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에 당첨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귀하가 청약한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를 위하여 당첨자 제출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당첨자들은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홈페이지(www.prugio.com/house/2020/hanam/apt/index_w.aspx)를 통하여 서류접수일 및 방문시간을 지정하여 예약 하시기 바랍니다.(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 외에는 예약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외 동반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시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 비접촉 체온계 및 열화상카메라 등을 통한 체온이 37.3도 이상인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1. 사전 서류접수 예약기간 : 2020.11.13(금) 10:00 ~ 11.23(월) 16:00 (45분 단위로 방문예약 가능)
2. 사전 서류접수 방문일정 : 2020.11.18(수) ~ 11.23(월) (09:30 ~ 17:45)
3.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기관추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 견본주택에 비치
	○		무주택 서약서	-	• 견본주택에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발급용 필수, 용도에 「아파트 공급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의 경우에 한하며 대리인은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5항에 의거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여, 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복무확인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시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함	
무주택 입증서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해당주택	•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족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축확인서류	해당주택	• 지자체 무허가 증명서류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 멸실·철거예정 증명서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대리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		위임장	청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관계 및 주소 변경이력이 표기 되도록 “전체포함” 및 “상세”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는 모집공고일(2020.10.22) 이후 발급 분에 한합니다.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초본을 “전체포함”으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에 당첨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귀하가 청약한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를 위하여 당첨자 제출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당첨자분들은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홈페이지(www.prugio.com/house/2020/hanam/apt/index_w.aspx)를 통하여 서류접수일 및 방문시간을 지정하여 예약 하시기 바랍니다.(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 외에는 예약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외 동반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시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 비접촉 체온계 및 열화상카메라 등을 통한 체온이 37.3도 이상인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1. 사전 서류접수 예약기간 : 2020.11.13(금) 10:00 ~ 11.23(월) 16:00 (45분 단위로 방문예약 가능)
2. 사전 서류접수 방문일정 : 2020.11.18(수) ~ 11.23(월) (09:30 ~ 17:45)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다 자 녀 가 구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 견본주택에 비치
	○		무주택 서약서	-	• 견본주택에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발급용 필수, 용도에 「아파트 공급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의 경우에 한하며 대리인은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 배우자의 자녀 및 직계존속 확인 필요시
	○		자녀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재혼·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자녀가 있을 때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의 전혼자녀가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
	○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직계비속	본인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복무확인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을시
○		기본증명서	자녀	• 자녀의 출생 관련 확인 필요 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임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무주택 입증서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해당주택	•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족대장등본 포함)	
		무여가건물확인서류	해당주택	• 지자체 무여가 증명서류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 멸실·철거예정 증명서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점사실 무효 확인서 등	
대 리 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	위임장	청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관계 및 주소 변경이력이 표기 되도록 "전체포함" 및 "상세"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는 모집공고일(2020.10.22) 이후 발급 분에 한합니다.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초본을 "전체포함"으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에 당첨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귀하가 청약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를 위하여 당첨자 제출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당첨자들은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홈페이지(www.prugio.com/house/2020/hanam/apt/index_w.aspx)를 통하여 서류접수일 및 방문시간을 지정하여 예약 하시기 바랍니다.(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 외에는 예약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외 동반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시 외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 비접촉 체온계 및 열화상카메라 등을 통한 체온이 37.3도 이상인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1. 사전 서류접수 예약기간 : 2020.11.13(금) 10:00 ~ 11.23(월) 16:00 (45분 단위로 방문예약 가능)
2. 사전 서류접수 방문일정 : 2020.11.18(수) ~ 11.23(월) (09:30 ~ 17:45)
3.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신혼부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 견본주택에 비치
	○		무주택 서약서	-	• 견본주택에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발급용 필수, 용도에 「아파트 공급계약용」으로 작성 기재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의 경우에 한하며 대리인은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보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채녀	• 채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재혼가정의 채녀일 경우 공급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채녀가 있을 때 • 채녀로 인정보고자 하는 배우자의 전혼자녀가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5항에 의거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여, 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제출. (2017.01.01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요함.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 서류(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증빙서류) 【②페이지 소득증빙서류 참조】
	○		기본증명서	채녀	• 출생관련 확인 필요 시
	○		임신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임신진단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 비치, 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해당자	• 견본주택 비치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무주택 입증서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해당주택
			무허가건물확인서류	해당주택	• 지자체 무허가 증빙서류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 멸실·철거예정 증명서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대리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		위임장	청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관계 및 주소 변경이력이 표기 되도록 "전체포함" 및 "상세"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는 모집공고일(2020.10.22) 이후 발급 분에 한합니다.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초본을 "전체포함"으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②

4. 전년도(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30% 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5.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인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② 재직증명서 ※유직기간이 있는 경우: 유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신규취업자	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②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사)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대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증명제출	①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직인날인) 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세무서, ②③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사(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영수증(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2019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관계 및 주소 변경이력이 표기 되도록 “전체포함” 및 “상세” 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
 ※ 상기 서류 및 부속적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는 모집공고일(2020.10.22) 이후 발급 분에 한합니다.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에 당첨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귀하가 청약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를 위하여 당첨자 제출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당첨자분들은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홈페이지(www.prugio.com/house/2020/hanam/apt/index_w.aspx)를 통하여 서류접수일 및 방문시간을 지정하여 예약 하시기 바랍니다.(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 외에는 예약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외 동반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시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 비접촉 체온계 및 열화상카메라 등을 통한 체온이 37.3도 이상인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1. 사전 서류접수 예약기간 : 2020.11.13(금) 10:00 ~ 11.23(월) 16:00 (45분 단위로 방문예약 가능)
2. 사전 서류접수 방문일정 : 2020.11.18(수) ~ 11.23(월) (09:30 ~ 17:45)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제 당첨자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노 부 모 부 양 자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 견본주택에 비치
	○		무주택 서약서	-	• 견본주택에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발급용 필수, 용도에 「아파트 공급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의 경우에 한하며 대리인은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여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직계존속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 존속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경우
	○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취차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5항에 의거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여, 출입국기록출력여부 Y로 설정하여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속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복부확인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부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시	
무주택 입증서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해당주택	•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축확인서류	해당주택	• 지자체 무허가 증빙서류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 열실·철거예정 증명서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대 리 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		위임장	청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관계 및 주소 변경이력이 표기 되도록 "전체포함" 및 "상세"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는 모집공고일(2020.10.22) 이후 발급 분에 한합니다.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초본을 "전체포함"으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에 당첨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귀하가 청약한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를 위하여 당첨자 제출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당첨자분들은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홈페이지(www.prugio.com/house/2020/hanam/apt/index_w.aspx)를 통하여 서류접수일 및 방문시간을 지정하여 예약 하시기 바랍니다.(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 외에는 예약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외 동반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시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 비접촉 체온계 및 열화상카메라 등을 통한 체온이 37.3도 이상인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1. 사전 서류접수 예약기간 : 2020.11.13(금) 10:00 ~ 11.23(월) 16:00 (45분 단위로 방문예약 가능)
2. 사전 서류접수 방문일정 : 2020.11.18(수) ~ 11.23(월) (09:30 ~ 17:45)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생애최초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 견본주택에 비치
	○		무주택 서약서	-	• 견본주택에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발급용 필수, 용도에 「아파트 공급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의 경우에 한하며 대리인은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직계비속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5항에 의거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여, 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복부확인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았는지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제출. (전체기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요함,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②페이지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제출서류 참조]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②페이지 소득증빙서류 참조]	
○		비사업자확인각서	성년자인 세대원	• 견본주택 비치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무주택 입증서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해당주택	•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족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축물확인서류	해당주택	• 지자체 무허가 증빙서류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 열실·철거예정 증명서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대리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	위임장	청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관계 및 주소 변경이력이 표기 되도록 "전체포함" 및 "상세"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는 모집공고일(2020.10.22) 이후 발급 분에 한합니다.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초본을 "전체포함"으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 (생애최초 특별공급) ②

4. 전년도(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구분 없음	130%이하	7,221,478원	8,094,245원	9,019,860원	9,872,308원	10,724,756원	11,577,203원

5.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인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② 재직증명서 ※유직기간이 있는 경우: 유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신규취업자	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②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대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증명제출	①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세무서, ②③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영수증(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2019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관계 및 주소 변경이력이 표기 되도록 "전체포함" 및 "상세" 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
- ※ 상기 서류 및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상기 서류는 모집공고일(2020.10.22)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